

## **2017년 제5회 행정사 1차 민법총칙 기출문제**

# 민법총칙 체계에 따른 기출문제 분석

|          | 핵심논점과 제5회 기출문제 분석                                                                           |
|----------|---------------------------------------------------------------------------------------------|
| 제1장 통칙   | 1. 법원(法源)-----1문제<br>2. 신의성실의 원칙----1문제                                                     |
| 제2장 인    | 1. 능력-----1문제<br>2. 주소<br>3. 부재와 실종-----1문제                                                 |
| 제3장 법인   | 1. 총칙-----1문제<br>2. 설립-----1문제<br>3. 기관<br>4. 해산<br>5. 비법인사단, 재단---1문제                      |
| 제4장 물건   | 1. 물건(부동산+동산)--1문제<br>2. 주물과 종물<br>3. 원물과 과실(천연, 법정)                                        |
| 제5장 법률행위 | 1. 총칙-----2문제<br>2. 의사표시-----3문제<br>3. 대리-----4문제<br>4. 무효와 취소-----3문제<br>5. 조건과 기한-----1문제 |
| 제6장 기간   | 1. 자연적 계산법<br>2. 역법적 계산법-----1문제                                                            |
| 제7장 소멸시효 | 1. 소멸시효기간-----3문제<br>2.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br>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br>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③

【해설】

- ③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즉 관습법은 법원(法源)이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이 아니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바,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정답】 ②

【해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소급효가 있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2항) 즉 철회는 계약에 관한 것이고 거절은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룰 수 있다.
-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정답】 ④**

**【해설】**

④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뤄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의 만료된 후에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그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주한다.
-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25조, 제118조)
-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5.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⑤

【해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ㄹ.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되지 않는다.

**6.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한다.

**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정답】 ②

【해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8.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②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이 우선한다.
- ③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만료점과 달리 기산점은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익일이 아니라 당일을 기산점으로 한다. 다만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 ① 연령계산과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 ②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민법 제155조)
-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⑤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9.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④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권자는 본인이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한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81다카549)
-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⑤ 선의·무과실의 상대방만이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135조)

10.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⑤

【해설】

⑤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정도)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그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10.7.29, 2009다56283 ; 대판 1999.4.13, 98다52483 ; 대판 1994.3.11, 93다40522).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민법 제13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추진할 수 없다.

③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1.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박, 경술, 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

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①

【해설】

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공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공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12.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③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

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④

【해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1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 ④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전한다.
- ⑤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5.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③**

**【해설】**

- ③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대결 2004.2.13, 2003마

44).

-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도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없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17조)
-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

**16.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2017. 행정사 5회】**

- ① 본인의 사망
- ② 대리인의 파산
- ③ 복대리인의 파산
-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정답】 ⑤**

**【해설】**

-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라 대리권 발생사유에 해당한다.(민법 제127조)

**17.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 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와 달리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법정대리 · 임의대리 모두 적용되므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18.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④

【해설】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이다.(민법 제151조 제3항)

19.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2017. 행정사 5회】

-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 ③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

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법정대리인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甲은 추인할 수 없다.

① 추인과 달리 취소는 미성년자도 가능하므로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

④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가 아니라 성립 시로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⑤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에는 현존이익이 없으므로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20.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민법 제139조)

2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2017. 행정사 5회】

-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③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이 되려면, 동법 제2호 이行的 청구나 동법 제5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2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행정사 5회】

-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⑤

【해설】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민법 제165조 제1항)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23.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2017. 행정사 5회】**

- ① 노역인의 임금채권
-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
- ③ 여관의 숙박료 채권
-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 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정답】 ②**

**【해설】**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한다.(민법 제163조 제2호)

**24.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5회】**

-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②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가 아니라 채무불이해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25.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2017. 행정사 5회】

- ① 목적
- ② 명칭
- ③ 사무소의 소재지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⑤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답】 ⑤

【해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이 사단법인의 정관기재사항에 해당한다.(민법 제40조 제5호)